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09
----------	-----

2016. 06. 14.(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 숙 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6년 05월 31일

다. 회부일자: 2016년 06월 1일

라. 상정일자: 2016년 06월 14일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의원)

가. 제안이유

「진로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진로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2) 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3) 지역 진로교육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4)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
- 5) 도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안 11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진로교육법」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
-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례안의 제2조제6호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진로전담교사 정의 및 배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조례안 제8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제1항의 ‘진로교육지원센터’ 를 ‘진로교육센터’ 로 하며,
- 「진로교육법」 제17조의 지역진로교육협의회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11조제1호의 ‘검토’ 를 ‘지원’ 으로 수정한 것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개정하고,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문구를 개정한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법체계상 문제가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급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학교”를 “초·중등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도 센터”라 한다)”를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도 진로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센터”를 “도 진로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센터”를 “지역 진로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역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교육감과 지방자

치단체장”을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지역 진로교육센터(이하 “지역 진로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 센터”를 “지역 진로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의장, 부의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소속 공무원
2. 진로교육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대학·지역사회단체 소속 직원, 학부모

제10조제4항 중 “협의회장”을 “의장”으로, “부협의회장”을 “부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검토”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 센터”를 “도 진로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협의회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2조1항 중 “협의회장”을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사업추진”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진로전담교사"란 「<u>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u>」 제2조제2항의 '<u>진로진학상담</u>' 과목의 자격을 취득한 교사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u>각급 학교진로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u> 한다.</p>	<p>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u> --.</p>
<p>제5조(진로전담교사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u>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u> 한다.</p> <p>② 교육감은 <u>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하 "전문 인력"이라 한다)</u>을 배치할 수 있다.</p> <p>③ <u>제1항과 제2항의 진로교사 배</u></p>	<p>제5조(진로전담교사 등) ① ----- ----- -----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u>학교(이하"초·중등학교"라 한다)</u>--.</p> <p>② ----- <u>초·중등학교</u>----- ----- ----- -----.</p> <p><삭제></p>

치 기준과 전문 인력의 자격 및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8. 지역센터 운영 협의 및 조정
9. ~ 11. (생략)

③ 교육장은 지역센터가 도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활용지원, 정보 제공, 진로관련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등 지역 내 진로교육을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

제8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

진로교육센터----- 도 진로센터-----.

② --- 도 진로센터-----
-----.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 진로센터 -----
9. ~ 11.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지역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 진로교육센터

(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제10조(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생략)

② 도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2. 진로교육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학부모 등

④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⑥ (생략)

(이하 "지역 진로센터"라 한다)-----.

② 지역 진로센터-----.

1.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장, 부의장 각 1명 -----

③ -----.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소속 공무원

2. 진로교육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대학·지역사회단체 소속 직원, 학부모

④ 의장-----
---- 부의장-----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도협의회 기능) 도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제8조제2항의 도 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3. (생략)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협의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협의회 회의) ① 도협의
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회
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협
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장이 소집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예산지원) 교육감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도협의회 기능) -----
-----.

1. ----- 지원 -----
2. ----- 도 진로센터 -

3. (현행과 같음)
4. ----- 의장 -----

제12조(도협의회 회의) ① -----

----- 의장 -----

의장-----.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지원) -----
----- 범위에서 --
-----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 등-
-----.

관계 법령

□ 진로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2장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8조(진로체험 지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운영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제10조(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2. 시·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 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